

Moplen RP344NU

랜덤 코폴리머



제품 설명

Moplen RP344NU는 LyondellBasell사가 개발한 Spheripol 공법으로 울산피피에서 생산한 고투명 폴리프로필렌 랜덤 코폴리머입니다. 이 제품은 균형잡힌 물성과 함께 낮은 가공온도에서 우수한 가공성과 투명성 및 힌지특성을 위해 디자인된 고투명 제품입니다. Moplen RP344NU는 투명용기, 가정용품, 음식용기, IBM/ISBM 병류, 용기 캡 및 뚜껑 등의 사출성형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Moplen RP344NU는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의 식품포장규격인 21 CFR 177.1520 규정을 만족하며 UL94HB의 난연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성	고투명성/ 고광택/ 힌지특성/ 무취/ UL94HB
시장	Rigid Packaging / Consumer Products
주요용도	투명용기/ 음식용기/ 가정용품/ 병류 (IBM/ISBM)/ 용기의 캡 및 뚜껑

ASTM Data			
물성	측정치	단위	측정방법
용융지수 (230°C, 2.16kg)	13	g/10 min	ASTM D1238L
밀도	0.9	g/cm ³	ASTM D1505
굴곡탄성률	12000	kg/cm ²	ASTM D790
인장강도(항복점)	300	kg/cm ²	ASTM D638
신율(항복점)	13	%	ASTM D638
아이조드 충격강도 (23°C)	5	kgfcm/cm	ASTM D256
록크웰경도 (R-Scale)	90	R-Scale	ASTM D785
열변형온도 (0.46 N/mm ²)	90	°C	ASTM D648
흐림도	14	%	ASTM D1003

1) 위의 정보는 참고용일 뿐이며, 제품 사양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2) 울산피피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사용 설명을 주의 깊게 검토하여 동 제품이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안전하고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동 제품에 대한 판매자의 제한 사항 및 사용 설명을 준수하지 않거나, 해당 제품을 특정 범주의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판매자에게 각각의 특정 용도를 통지할 의무가 있을 시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제품 사용에 따른 일체의 상해 또는 손해는 사용자의 전적인 책임이며, 판매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3) 계약을 통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울산피피는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증 (판매적합성 또는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일체의 보증 포함)도 하지 않습니다.

4) 본 제품(들)의 사용은 아래의 경우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i. 미국 식품의약품국 클래스 3,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4 및/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3 의료 기기;
- ii. 영구적 체내 이식을 수반하는 용도;
- iii. 생명연장을 위한 의학적 용도; 또는
- iv. 납, 석면 또는 메틸삼차부틸에테르 (MTBE) 관련 적용

사용자는 본 제품을 위 범주에 사용함에 따른 일체의 상해 또는 손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판매자는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5) 판매자가 해당 제품의 각각의 구체적 사용 방식에 대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래 범주에서 본 제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단, 판매자는 자신의 단독 재량으로 동 제품의 판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i. 미국 식품의약품국 클래스 1,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1 및/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1 의료 기기;
- ii. 미국 식품의약품국 클래스 2, 캐나다 연방보건부 클래스 2 혹은 클래스 3 및/또는 유럽연합 클래스 2 의료 기기;
- iii. 전술한 의료 기기 중 하나의 일부 또는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필름, 걸포장 및/또는 제품 포장재;
- iv. 활성 제약성분에 직접 닿는 포장재 및/또는 흡입, 주사, 정맥·코·안과적(눈)·소화기 혹은 국소(피부) 투여를 위한 조제 형태;
- v. 담배 관련 제품 및 사용;
- vi. 전자 담배 및 유사 기기; 또는
- vii. 원자로의 일부 또는 부품으로 간주되는 압력 파이프 또는 설비

※미국 식품의약품국, 캐나다 연방보건부와 유럽연합 규정에 대해 언급된 모든 내용은 그에 준하는 다른 나라의 규제 분류를 포함합니다.

6) 본 건 책임부인고지문의 목적상 "판매자"는 울산피피 및 울산피피가 본 고지문이 적용되는 제품 판매를 위해 선임한 자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Trademarks

제품명에 언급된 상표는 라이온델바젤이 소유하고 사용하며, 라이선스 하에 울산피피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입니다.